

「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정도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공식적인 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일 조정을 통하여 탄력적인 운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 조항(안 제6조)
- 수련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변경 사항(별표 2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31조, 제32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부서검토: 교육청소년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 한시적 조정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4곳이며 현재 특정 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중임. 이처럼 비유동적인 휴관일 지정으로 인해 휴관일에 맞추어 대회의 일정을 조정하게 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,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추후, 집행기관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